

안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11
----------	-----

제출년월일 : 1994. 6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1. 제정 사유

'91. 3. 8.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고 ('92.12. 8)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 법틀이 제정되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틀에서 시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거 시조례로 제정하여 쓰레기 감량 및 청소행정을 원활히 추진코자 함

2. 주요 내용

- 과태료 부과 : 시장이 부과 징수 한다. (안제2조)
- 청문의 기회 부여 (안제3조) - 10일이상 청문의 기회 부여
- 과태료 처분 통지 (안제4조)
 -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안제5조)
 - 별첨 "조례안" 참조
- 이의 제기 및 법원에 통보 (안제6조) - 30일이내 이의 제기
- 강제징수 (안제7조) - 독촉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안제9조)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은 과태료 수납부를 비치관리

3.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4조 (과태료의 징수 절차)

" -----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과태료)

① -----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2조 (과태료의 징수 절차)

"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 한다.

제3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 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발부 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벌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벌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 (법 제7조) 가. 밀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다. 휴식 또는 행사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차량, 손수레등 밀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축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나량 배출자 및 동법 제17조 제1항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제외)	25	25	25
	2. 일반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2항) 가. 일반폐기물의 배출시에 시장이 지정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5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원의 절약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 률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 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 한 경우	50	50	50
	3.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 을 위반한 자 (법 제16조 제2항)	300	500	1,000
	4.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 (법 제17조 제4항)	500	700	1,000
	5.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법 제20조 제3항)	1,000	-	-
	6.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	300	500	1,000
	1. 1회용품의 사용자재등을 위한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5 항)			
	가.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 미터 미만의 식품판매업소에서 1회용 품 사용자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1,000	2,000	3,000
	나.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판 매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1,500	2,500	3,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p>사용자에게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다.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의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 일반목욕장업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p> <p>(2) 특수목욕장업 (사우나탕, 터키탕, 복합 목욕탕)</p> <p>라. 객실이 30실이상인 숙박업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의제를 위한 조치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p> <p>(2) 여관업 및 이인숙업</p> <p>마.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사. 백화점에서 재사용제품의 교환, 판매 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000</p> <p>1,500</p> <p>1,500</p> <p>1,000</p> <p>2,000</p> <p>2,000</p>	<p>2,000</p> <p>2,500</p> <p>2,500</p> <p>2,500</p> <p>2,500</p> <p>2,500</p>	<p>3,000</p> <p>3,000</p> <p>3,000</p> <p>3,000</p> <p>3,000</p> <p>3,000</p>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2.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 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보관 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 (법 제16조 제2항)			
	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300	500	1,000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800	900	1,0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
한다.

제 호

반 음 :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안 산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개인 통지용)

과태료 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안산시 통보용)

영 수 증
(개인 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p>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안 산 시 장 (인)</p>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p>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p> <p>년 월 일</p> <p>수납은행 :</p> <p>수납날자도장 (인)</p>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p>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p> <p>년 월 일</p> <p>수납은행 :</p> <p>수납날자도장 안산시장 귀하</p>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p>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p> <p>년 월 일</p> <p>수납은행 :</p> <p>수납날자도장 취급자인</p>		

380mm X 180mm
(인쇄용지 특급 34g/m²)

(감)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 X 118mm
(인쇄용지[특급] 34g/m²)

○ 표의 뒷면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 산 시 장 (인)

168mm X 118mm
(인쇄용지[특급] 34g/m²)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인쇄
- 2,3번의 밑줄친 부분에 피처분자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굵은 글씨체로 인쇄

209

(평)

(수남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p>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p> <p>년 월 일</p> <p>수남은행 :</p>							
수남날짜도장		안 산 시 장 (인)					

208

168mm

(인쇄용지[특])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인쇄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p>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p> <p>년 월 일</p> <p>수납은행 :</p>							
수납날짜도장				취 급 자 인			

168mm X 118mm
(인쇄용지[특급] 34g/m²)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인쇄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 금액			⑦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210mm X 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과태료 부과 취소 (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액	비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안 산 시 장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과태료 처분 내역	④부과기관		⑥납부통지서번호	
	⑤고지받은날자		⑦과태료금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 처분에 대불사 복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제
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 안 산 시 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대 이 의 제 기 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고지일자	⑥ 과 태 료 액
	⑤ 부과기관	⑦ 이의제기 일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호	③ 과태 료처분 통지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 기 한		⑦ 금액	납 부 의 무 자		⑩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⑤ 당초	⑥ 독촉		⑧ 성 명	⑨ 주 소		⑪ 이의제기일	⑫ 법원통보일

222